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5. 10.] [대통령령 제34501호, 2024. 5. 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농수산물 등의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양배추 및 포도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각각 0퍼센트 및 5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당근, 건조한 김 및 조미김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배추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코코야두는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0퍼센트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 대통령령 제34501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9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13까지"로 한다.

별표 10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11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1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별표 10]

2024년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4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 (kohlrabi)·케일(kale)과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90	기타	양배추(신선한 것 으로 한정한다)	0	6,000톤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 로 한정한다)			
0806	10	신선한 것		5	수입전량

[별표 11]

2024년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6		당근·순무·셀러드용 비트(beet root)·선모(仙茅)·셀러리악(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	10	당근과 순무			
		1. 당근	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40,000톤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사탕무와 사탕수수(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복지 않은 시코리엄티부스 새티범(<i>Cichorium intybus sativum</i>)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	2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	21	식용			

		2. 기타	김(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	700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일·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99	기타			
		5. 조제한 식용 해초류	김	0	125톤

[별표 12]

2024년 5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704		양배추·꽃양배추·콜라비(kohlrabi)·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	90	기타	배추(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	수입전량

[별표 13]

2024년 5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수입전량